

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안내



부정수급(자진) 신고

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,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


신고방법

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,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

신고방법 (인터넷) 고용24 홈페이지(work24.go.kr), 국민신문고 (우편 및 팩스)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

신고요령 (자진신고) 신고자 인적사항 및 자진신고내용 기재
(제보) 신고자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, 증거자료 제시
* 익명신고 가능, 단,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



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혜택

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

추가징수
(최대 5배) 면제

형사처벌(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 감면
(부정수급액·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 고려),
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1/3까지 감경



고용보험 부정수급 시 받는 불이익

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

행정처분

실업급여 등 급여 지급중지	실업급여 등 급여 전액반환	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형사처벌

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고용보험 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

- (실업급여 부정수급) 근무기간·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,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
- (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)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
- (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)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
- (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)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



자주하는 질문(FAQ)



Q1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
A

자진신고와 제보는 **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(work24.go.kr), 국민신문고)이나, 팩스,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.**

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,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,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고포상금은

- ① 실업급여·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%(연간 500만원 한도)를 지급
- ②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%(연간 3,000만원 한도)를 지급

Q2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?

A

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,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·처분횟수 등 **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.**

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**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**

또한,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등 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자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.

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,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되는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

Q3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A

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받으면 **급여 지급이 제한되며, 그간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.**

또한 **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**